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41

제출년월일 : 2015. 11. 18.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조문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정비(별표)

○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규제완화 등 허가요건 정비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16.(금) ~ 11. 5.(목) (20일간)

☐ 기타 참고자료 : 붙임

○ 현행조례(전문)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 붙임6

〈 붙임1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 을 "제6조제2항"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제15호" 를 "제2조제1항제16호" 로 한다

제3조 중 "제4조 및 규칙 제10조와 제11조" 를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녹색에너지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에너지과장 박 양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에너지자원계장 백 현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윤 병 (행정 2840)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이윤병 2015-11-16 14:37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대상지역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다만,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준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함.
	시설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을 할 것.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충 전 사 업	연결도로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 다만, 대부동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함.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1]으로부터 보호시설[2]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이윤병 2015-11-16 14:37

〈 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조제2항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제5조에 ----------. 2.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
제3조(허가요건) 법 제4조 및 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요건)--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이윤병 2015-11-16 14:37

현 행	개 정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요 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대상 지역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다만,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준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함.
	시설 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을 할 것.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충전사업	연결 도로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 다만, 대부동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함.
	안전 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1]으로부터 보호시설[2]까지는 규칙 별표3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요 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대상 지역	(현행과 같음)
	시설 기준	(현행과 같음)
충전사업	연결 도로	(현행과 같음)
	안전 거리	---------- ---------- ---------- ----------보호시설[2]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 ---------- ----------. 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이윤병 2015-11-16 14:37